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5. 30., 2011. 9. 30.>

제2조(적용 범위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단서에서 “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

1. 부동산업
2. 일반유흥 주점업
3. 무도유흥 주점업
4. 기타 주점업
5. 기타 잼블링 및 베팅업
6. 무도장 운영업

[전문개정 2013. 5. 22.]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,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.

④ 삭제 <2008. 2. 29.>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08. 1. 31.]

제4조(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)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

장은 지방자치단체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(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30., 2007. 3. 22., 2008. 1. 31., 2010. 7. 12., 2017. 7. 26.>

②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
2.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3.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·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협의회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5조 삭제 <2008. 2. 29.>

제6조(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(이하 “협동조합등”이라 한다), 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(이하 “사업자단체”라 한다),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30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

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,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제7조(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)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8조(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·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·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9조(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

업의 모범사례를 발굴·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9조의2(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17. 7. 26.>

1.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
2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(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)
3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

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
2.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
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

2.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08. 1. 31.]

제9조의3(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) ① 법 제10조

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
2.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
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
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,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
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
6.>

[본조신설 2008. 1. 31.]

제10조(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중소기업 관련
기관,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
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. 31., 2017. 7. 26.>

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
와 같다. <개정 2006. 5. 30., 2010. 7. 12., 2017. 7. 26.>

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
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
2.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
3.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
것
4.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
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

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
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대
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④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7. 7. 26.>

제11조(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·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
2.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
3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13조(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7. 7. 26.>

제14조(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출입국관리법

시행령」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30., 2017. 7. 26.>

제15조(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·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16조(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,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17조(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)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,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0. 6. 29.>

제17조의2(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(이하 “인재육성형 중소기업”이라

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9. 11.>

1.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

2. 매출 및 임금의 증가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9. 11.>

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,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

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4. 7. 21.]

제17조의3(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,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7. 21.,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1. 9. 30.]

[제목개정 2014. 7. 21.]

제18조(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) 법 제1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<개정 2008. 1. 31., 2013. 5. 22., 2017. 7. 26.>

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(이하 “인력고도화 계획”이라 한다)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2.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
3.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
4.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

제19조(협약체결 및 관리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

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. 31., 2017. 7. 26.>

1. 사업의 내용
2.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
3. 사업시행의 기대성과
4.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
6.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20조 삭제 <2008. 1. 31.>

제21조(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5. 30., 2007. 9. 10., 2009. 11. 20., 2017. 7. 26.>

제22조 삭제 <2008. 1. 31.>

제23조 삭제 <2008. 1. 31.>

제23조의2(문화생활 지원대상 등)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·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,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08. 1. 31.]

제24조(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,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30., 2017. 7. 26.>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

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08. 1. 31., 2017. 7. 26.>

④ 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08. 1. 31., 2017. 7. 26.>

제25조(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
2.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·홍보
3.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

제26조(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30., 2007. 9. 10., 2009. 11. 20., 2017. 7. 26.>

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제26조의2(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)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

을 말한다. <개정 2019. 5. 28.>

1.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(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) 제도의 운영
 2.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
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
 - 가.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
 - 나.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
 4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2조·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·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
 5. 「상법」 제340조의2·제542조의3 또는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6.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
-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(이하 “성과공유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

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 기준,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전문개정 2018. 9. 11.]

제26조의3(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

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
2.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
(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)
4.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11.]

제27조(근로자의 창업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2조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30., 2008. 1. 31., 2017. 7. 26.>

제27조의2(전문기술·기능인력의 발굴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·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·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·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·분야별 전문기술·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④ 전문기술·기능인력의 추천절차,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08. 1. 31.]

제27조의3(전문기술·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)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·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

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.

<개정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·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8. 1. 31.]

제28조(주택의 우선분양)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“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 <신설 2006. 5. 30., 2008. 1. 31., 2009. 4. 21., 2009. 9. 21., 2013. 5. 22., 2014. 4. 29., 2014. 7. 16., 2015. 12. 28., 2016. 8. 11.>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(이하 “주거전용면적”이라 한다)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
- 나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
3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
4.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
②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

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
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
2006. 5. 30., 2008. 1. 31., 2017. 7. 26.>

제29조(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) 법 제33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업”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.

제30조(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
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
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5. 30., 2015. 5. 26., 2017.
7. 26.>

제30조의2(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
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(이하 “성과보상기금”이라
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
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“중소벤처기업진흥
공단”이라 한다)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
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. <개정 2019. 4. 2., 2019. 5. 28.>

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
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
7. 7. 26., 2019. 4. 2.>

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
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

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2.>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[중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10으로 이동 2014. 7. 21.]

제30조의3(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

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9. 5. 28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4. 2., 2019. 5. 28.>

1.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2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
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 - 나. 공제·보험·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

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4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(이하 “기금운용계획안”이라 한다)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4.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(이하 “공제규정”이라 한다)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5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6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(이하 “작성지침”이라 한다)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4. 2.>

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4. 2.>

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
2.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
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사항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7(책임준비금의 적립·운용)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(이하 “공제사업”이라 한다)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2., 2019. 5. 28.>

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·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2.>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8(공제규정)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<개정 2019. 4. 2.>

1.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
2.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
3.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
4.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9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4. 2.>

1.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
2.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
3.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0조의10(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(이하 “전담조직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<개정 2017. 7. 26.>

1.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2.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

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·공급업무의 지원
2.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
3.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
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④ 전담조직의 시설,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08. 1. 31.]

[제30조의2에서 이동 2014. 7. 21.]

제31조(업무의 위탁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, 중소기업진흥공단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또는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9. 30., 2013. 5. 22., 2014. 7. 21., 2017. 7. 26., 2018. 9. 11., 2019. 4. 2.>

1.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

2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

2의2.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<중전의 제2호에서 이동>

3.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

4.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

5.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

5의2.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

6.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 후 3년 경과 여부 확인

6의2.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실시

6의3.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

6의4.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

7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

8.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

9.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

9의2.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 <중전의 제9호에서 이동>

10.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,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·확산

11.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·보급

11의2.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

12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5. 22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08. 1. 31.]

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5. 12. 30.]